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및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자침

2023. 05.03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및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22.07.06.

개정 2023.05.03.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의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및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접근”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이 신체적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기술”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3.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라 함은 지능정보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조기기”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6.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라 함은 고시 제17조 별표4에서 지정한 지능정보제품을 말한다.
7.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이하 ”시험평가“라 한다)”라 함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가 별표4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 세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행위를 말한다.
8. “시험평가기관”이란 제1항 제7호의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9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평가기관에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시험평가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이 적용되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범위는 고시 별표4와 같다.

제2장 검증 수행

제4조(검증 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검증 신청 접수
2. 고시 별표5에 따른 검증기준 충족 여부 심사평가
3. 기타 검증에 필요한 업무

제5조(검증 신청 및 접수) ①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검증 신청인”)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검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과 함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영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검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의 검증기준에 따른 검증 지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4조에 따른 검증 지원을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검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검증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검증 수행) 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시험평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발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검증업무를 수행한다. 연장검증 업무도 이와 동일하다.

1. 시험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전문가평가 및 사용자평가 결과보고서 확인
2. 고시 별표5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검증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증

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검증 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지능정보제품과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진 자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지능정보제품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인정한 자

③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평가기관의 시험평가 환경 및 항목의 타당성

2. 시험평가기관의 시험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3.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행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검증 결과
4.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⑤ 검증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검증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으며, 검증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검증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검증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⑧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 검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검증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검증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검증위원회 회의 종료일 이후 1주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검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고시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연장신청)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③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검증의 결과 유효기간 연장 부적합 사유가 없는 경우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검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제9조(시험평가기관 지정) 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시험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별표1의 시험평가기관 지정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사업계획서
3. 시험평가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지능정보제품 관련 개발 및 용역 수행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접수신청 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심사절차는 1차 서류 심사과 2차 현장심사 그리고 3차 발표심사 순으로 진행한다.

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시험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별표2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심사의 세부심사기준 심사
2. 시험평가기관 지정의 적합성 결정
3. 시험평가기관 지정취소의 건
4. 그 밖에 시험평가기관 지정심사와 관련되는 업무

②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능정보제품 관련 전문가, 기술사, 장애인·고령자 요구사항 등 업무수행능력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시험평가기관 지정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위원 전원합의에 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시험평가기관 지정취소) 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평가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시험평가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시험평가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시험평가 업무를 한 경우
- 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취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시키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정지시킨 경우, 그 사실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평가기관 업무처리 절차) ① 시험평가기관의 장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6조에 따른 검증 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험평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 ③ 시험평가기관의 장은 그 사업의 폐업·휴업 등 시험평가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시험평가기관 역할과 의무) ① 시험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전문가 시험평가
 2.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사용자 시험평가
 3. 기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에 관련된 업무
- ② 시험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직전 연도 시험평가 신청 및 수행 현황자료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시험평가 수행

제15조(시험평가 대상 및 범위) ① 시험평가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하며, 시험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작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 촉각정보를 점자로 제공하는 경우 「점자법」 제3조제6호의 점자규정
 3. 수어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의 한국수어
 4. 기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경우 별표6 다목에 있는 시험

평가 기준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한다.

제16조(시험평가 제외 대상) 사용자 조작과 관련이 없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시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시험평가 신청 및 접수)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시험평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3호서식 시험평가 신청서에 제품설명서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과 함께 시험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3. 기타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시험평가기관은 시험평가 신청인이 제출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 시험평가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험평가 신청인과 시험평가 수행 계약을 체결한다.

③ 시험평가 비용은 시험평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시험평가 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18조(시험평가 계획) 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신청인과 수행 계약을 체결한 후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평가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평가 수행원칙
2. 시험평가 환경
3. 시험평가원 구성(전문가, 사용자)
4. 기타 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시험평가 종류) ① 시험평가는 신규 평가와 유효기간 연장 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신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1.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2. 검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3. 검증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였더라도 기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등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4. 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에서 불합격한 경우

③ 유효기간 연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1. 검증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
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등이 상당한 변화가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검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가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신규 평가로 진행한다.

제20조(시험평가 절차) ① 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계획에 따라 신규 평가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를 진행한다.

② 신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 서면평가

2.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원이 수행하는 전문가평가

3. 전문가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유형별 1인 이상의 사용자평가관리원과 유형별 2인 이상의 사용자평가심사원이 수행하는 사용자평가

③ 유효기간 연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원이 수행하는 전문가평가

2. 전문가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장애인·고령자로 구성된 유형별 1인 이상의 사용자평가원이 수행하는 사용자평가

제21조(서면평가) 서면평가는 시험평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로 진행되며, 별표4에 따른 시험평가 세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가평가) 전문가평가는 2인 이상의 전문가평가원이 별표4 가목에 따른 전문가 시험평가 세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험평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 심사의 경우 1인 이상의 전문가평가원이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자평가) 사용자평가는 별표4 나목에 따른 사용자 시험평가 세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별로 사용자 심사원단을 구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 평가의 경우 유형별로 1인 이상의 사용자 심사원단이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 전맹 시각장애인 2인 이상

2. 저시력 시각장애인 2인 이상

3. 지체(하지장애) 또는 휠체어 사용 척수장애인 2인 이상

4. 지체(상지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 2인 이상

5. 청각·언어장애인 2인 이상

6. 고령자(만 70세 이상) 2인 이상

7. 일반국민(20대 ~ 50대) 5인 이상

제24조(시험평가 결과 통보) 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결과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과 시험평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22.07.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해당사업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험평가기관 지정 심사기준

가. 인력 세부 기준

구분	기술등급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자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자
시험 평가원	전문가 시험평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2.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4.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6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사용자 시험평가 관리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사용성 평가 관련 경력이 있는 자 2.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사용성 평가 관련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4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사용성 평가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4.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사용성 평가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사용성 평가 관련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사용성 평가 관련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나. 업무에 필요한 환경 및 조건 기준

1. 설비 관련 기준

- 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전문가심사가 가능한 공간 보유
- 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사용자심사가 가능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유
- 다. 온라인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전용선 설치
- 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HW, SW 등을 보유

2. 운영 관련 기준

- 가. 전문가시험평가원 2인 이상 상주인력 보유
- 나. 사용자시험평가관리원 1인 이상의 상주인력 보유
- 다. 사용자시험평가를 위한 비전문가 사용자평가원 15인 이상의 비상주인력 풀 확보
 - 1) 전맹 시각장애인 2인 이상
 - 2) 저시력 시각장애인 2인 이상
 - 3) 지체(하지장애) 또는 휠체어 사용 척수장애인 2인 이상
 - 4) 지체(상지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 2인 이상
 - 5) 청각·언어장애인 2인 이상
 - 6) 고령자(만 70세 이상) 2인 이상
 - 7) 일반국민(20대 ~ 50대) 5인 이상

[별표2] 시험평가기관 지정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심사기준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심사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1. 서류 심사 (적/부)	가. 법인요건 및 사업목적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여부	적합/부적합
	나. 조직	•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험평가업무 • 전담조직으로 문서화된 조직구조의 보유여부	적합/부적합
	다. 인력	• 전문가평가원 2인 이상 및 사용자평가원을 유형별로 각각 2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상의 비상주인력 보유	적합/부적합
	라. 설비	• 시험평가 관련 상담, 서류 보관, 시험평가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 및 관련 장비 보유 여부	적합/부적합
2. 제안서 평가 (60점)	가. 사업계획서 (30점)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관련 수행 경험 및 실적	5
		• 사업수행 목표, 전략, 범위 및 절차의 적절성	5
		•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의 구체성	5
		• 사업 지원 및 관리계획의 충실성	5
		• 시험평가 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5
	나. 시험평가 업무수행 규정 (30점)	• 시험평가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규정	3
		• 시험평가 업무절차에 관한 규정	3
		• 시험평가 수수료에 관한 규정	3
		• 시험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	3
		• 문서관리 및 서식에 관한 규정	3
		• 시험평가 절차 및 시험평가원의 보안관리 규정	3
		• 시험평가원의 교육계획	3
		• 시험평가 품질관리 규정	3
		• 사후관리 규정	3
• 분쟁처리절차 및 조치방법, 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	3		
3. 발표평가 (40점)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수준평가 (40점)	• 시험평가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의 내용에 관한 질의	10
		• 시험평가 공정성 및 심사결과 대응에 관한 질의	10
		• 시험평가 사업계획 및 시험평가기관에 관한 질의	10
		• 홍보 및 수수료 등 기타에 관한 질의	10
4. 현장 실사 (일치/불일치)	• 사무공간 확보 여부 (심사업무수행 구역 확보 등)		일치/불일치
	• 상주·비상주 시험평가원 및 인력 확보 여부		일치/불일치
	• 시험평가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 확보 여부		일치/불일치
	• 시험평가와 관련 있는 인력·조직·설비 관리·운영 등 내부규정 확보 여부		일치/불일치
합 계			

[별표3]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 수수료 비용 산출 기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 수수료 산출 기준

1.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 수수료는 평가시험 설계비용과 평가시험 수행비용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써 산정된다.

- * 평가시험 설계 : 평가요청사항분석, 대상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분석, 평가항목 및 시나리오 개발, 환경구축, 검토위원회 운영 등 시험평가 준비에 관한 업무
- * 평가시험 수행 : 설계가 완료된 시험평가 계획에 따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시험평가 기준 충족 여부를 시험하는 업무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 수수료
= 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2.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 비용의 구성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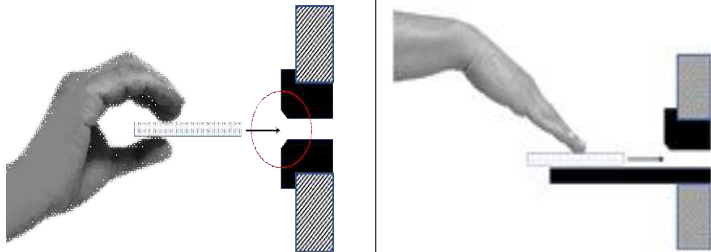
항 목 별	적 용 범 위	산 출 기 준
■ 인 건 비	○ 시험 기간과 투입 인력에 따른 비용	시험기간(일) ×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 직접경비	○ 시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 (장비비, 여비 등)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
■ 제 경 비	○ 인건비 및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시험 업무의 행정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 행정업무 : 평가시험에 필요한 신청 접수, 상담, 계약, 평가시험팀 구성, 평가시험 계획서 작성 및 설명회 개최, 평가시험 결과서 발급, 사후관리 등	
■ 기 술 료	○ 관련 기술개발 활동(조사 연구비, 기술개발비 및 훈련비 등)에 따른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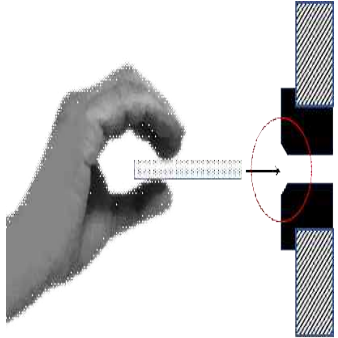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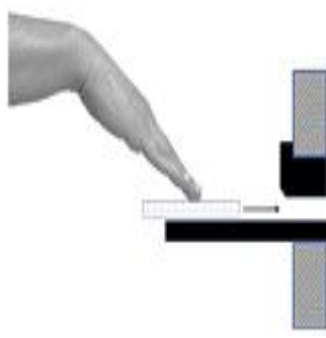
[별표4]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 세부 기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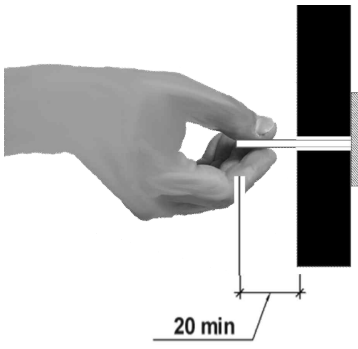
가. (전문가 시험평가 세부 기준 및 방법) 전문가 시험평가는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본” 접근성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이외의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실시한다.

원칙 1. 손 또는 팔 동작 보완(/9)

지표 번호	1.a	- 모든 컨트롤은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다중 누르기 동작은 연속된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모든 컨트롤(버튼 및 키)에 대해서 조작하여 확인 ○ 다중 누르기 동작을 요구하는 컨트롤을 제공하지 않으면 적합 ○ 하나라도 다중 누르기 동작을 요구하는 컨트롤을 제공하는 경우, 연속된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하면 적합 ○ 하나라도 다중 누르기 동작을 요구하는 컨트롤을 제공하는 경우, 연속된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 부적합 ○ “해당없음” 인 경우 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1.b	화면상의 모든 이웃한 컨트롤 간에는 2.5mm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모든 컨트롤 사이의 간격을 측정 ○ 모든 컨트롤 사이의 간격이 2.5 mm 이상이면 적합 ○ 컨트롤 사이의 간격이 1개라도 2.5 mm 미만이면 부적합 ○ “해당없음” 인 경우 적합	최소	() mm
			최대	() mm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1.c	모든 컨트롤은 표면적의 크기가 150mm ² 이상, 한 변의 길이가 최소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크기 측정 ○ 모든 컨트롤의 작은 변 길이가 12 mm 이상이면 적합 ○ 하나의 컨트롤이라도 작은 변 길이가 12 mm 미만이면 부적합 ○ “해당없음” 인 경우 적합	최대	() mm
			최소	() mm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1.d	모든 컨트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힘은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22.2 N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인 컨트롤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물리적 컨트롤에 대해서 조작에 요구되는 힘을 측정 ○ 물리적 컨트롤에 조작에 요구되는 힘이 최대 22.2 N 미만이면 적합 ○ 물리적 컨트롤에 조작에 요구되는 힘이 최대 22.2 N 보다 큰 힘을 요구하면 부적합 ○ 물리적 컨트롤이 없고 화면상의 컨트롤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없음” 으로 적합 	최대	() N
			최소	() N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1.e	카드 투입구는 카드의 원활한 삽입을 도와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결제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투입구가 있는 경우, 카드 투입구에 대하여 확인(스캔의 경우 1.g에 해당) ○ 카드 투입을 원활하게 보조하는 형태의 가이드라도 제공하면 적합 ○ 투입구의 홈만 있다면 부적합 ○ 카드 투입구가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적합 		
			적합	()
			부적합	()
			 <p>a) 갈매기 모양의 삽입구(원 안) b) 가이드를 이용한 삽입구</p>	
지표 번호	1.f	카드 삽입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 곧바로 카드를 배출하고 경고음을 발생시켜야 한다.	구분	결제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를 반대 방향으로 삽입하여 시험 ○ 카드 삽입 방향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면 적합 ○ 경고음 또는 안내음성과 함께 카드를 배출하면 적합 ○ 경고음 없이 아무 조치가 없으면 부적합 ○ 카드 투입구가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1.g	여권, 또는 고지서 등을 정확하게 투입 또는 스캔하기 위한 가	구분	개인정보

번호	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력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R코드, 여권, 고지서 등의 투입구 / 스캔에 대하여 확인 ○ QR코드, 여권, 고지서 등의 투입을 원활하게 보조하는 가이드를 제공하면 적합 ○ 투입구만 있다면 부적합 ○ QR코드, 여권 또는 기타 서류를 스캔할 보조대가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적합	()	
		부적합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a) 칼매기 모양의 삽입구(원 안)</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 가이드를 이용한 삽입구</p> </div> </div>			
지표 번호	1.h	지문 인식을 위해 손가락을 정확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개인정보 입력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 인식장치에 대하여 확인 ○ 지문 인식을 위해 손가락을 올려놓기 쉽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면 적합 ○ 스캔 판만 있다면 부적합 ○ 지문인식 기능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1.i	<p>사용자가 출력 매체(영수증, 티켓 등)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력 매체가 작은 티켓 등의 경우, 배출구 밖 최소 20 mm 이상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② 서류용지같이 출력 매체가 큰 경우, 받침 상자에 출력해준다. 	구분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① 출력 매체가 작은 티켓 등의 경우, 배출구 밖 최소 20 mm 이상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길이	() mm
	② 서류 용지와 같이 출력 매체가 큰 경우, 받침 상자에 출력해 준다.		
	○ 티켓 또는 영수증 같이 작은 크기의 종이나 카드를 출력할 경우, 출력 매체가 배출구 밖으로 최소 20 mm 튀어나와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게 잡고 있다면 적합 ○ 20 mm 보다 적게 나와서 빼기 불편하거나 힘을 주어야 뺄 수 있다면 부적합 ○ 출력 매체를 잡을 수 없거나 바닥에 떨어져도 부적합 ○ 증명서나 서류 등의 큰 크기의 종이 출력의 경우, 출력물을 모아서 받아주는 상자 형태의 받침대가 있으면 적합 ○ 큰 크기의 종이 출력물을 받아주는 받침대가 없으면 부적합 ○ 어떠한 종류의 매체 출력 기능도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적합	적합	()
		부적합	()
	 <p>a) 배출 길이</p>		

원칙 2. 반응시간 보완(/2)

지표 번호	2.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광고 등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가 부득이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앞/뒤로 이동, 일시정지와 같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등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가 부득이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건너뛰기, 일시정지와 같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모든 화면에 대해서 확인 	자동 변경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선택적 응답을 요구하는 조작에는 시간제한(timeout)을 두지 않아야 한다. -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는 경우, 화면에 남은 제한 시간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는 경우, 화면에 남은 제한시간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확인 ◎ 모든 화면에 대해서 확인 	최소	() 초
			적합	()
			부적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한이 적용되는 화면에서 남은 제한시간을 표시해주고 이를 연장시키는 컨트롤이 있으면 적합 ○ 남은 시간 표시가 없거나, 시간제한을 연장시키는 컨트롤이 없으면 부적합 ○ 모든 선택에 대해서 시간제한이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적합 		

원칙 3. 시력 보완 및 대체 (/13)

지표 번호	3.a	모든 시각적 문자 정보는 음성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음성을 활성화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모든 화면에 대해서 확인 ○ 음성안내 활성화 컨트롤이 모든 화면에서 제공되고, 음성안내를 활성화 했을 경우 화면의 모든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면 적합 ○ 음성안내 활성화 컨트롤이 모든 화면에서 제공되지 않으면 부적합 ○ 어느 하나의 문자 정보에 대해서라도 시각 정보와 동일한 음성으로 안내해주지 않으면 부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3.b	- 음성 정보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단자 및 연결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연결하면 스피커에서 읽어주는 소리는 차단되어야 한다. ※ 표준 이어폰(3.5 mm) 또는 무선 이어폰 등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기기상의 연결단자를 확인 ○ 표준 이어폰(3.5mm 단자, USB-C타입) 또는 무선 이어폰(블루투스 등) 등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으면 적합. ○ 이어폰을 꽂았을 때 스피커에서 음성이 그대로 출력되면 부적합. 단, 스피커로 음성 출력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 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3.c	-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음량조절 기능, 일시 정지 및 다시 듣기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음량조절범위) 음량 절 범위는 50dB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시듣기) 음성 다시 듣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모든 화면에 대하여 확인 ○ 음량을 최소 50dB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과 다시 듣기 기능이 모두 제공되면 적합 ○ 음량을 최소 50dB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과 다시 듣기 기능이 모두 제공되지 않으면 부적합	최대	() dB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3.d	- 모든 선택 가능한 시각적 정보는 물리적 키패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물리적 키패드는 화면상에서 초점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숫자 키패드 또는 화살표 방향 키패드 등을 의미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모든 선택지에 대하여 확인		
		○ 물리적 숫자 또는 방향(화살표) 키패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화면상에서 선택지에 대한 초점의 이동이 가능하면 적합 ○ 물리적 키패드가 제공되지 않으면 부적합 ○ 물리적 키패드로 선택 불가능한 화면상의 컨트롤이 있으면 부적합	적합 ()	
지표 번호	3.e	물리적 키패드 입력장치는 기준점에 돌기 표시를 붙여 촉각으로 위치와 배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물리적 키패드에 대하여 확인		
		○ 물리적 키패드의 기준점에 촉각돌기 표시가 있으면 적합 ○ 물리적 키패드에 점자 또는 양각의 촉각 표시가 있으면 적합 ○ 물리적 키패드가 제공되지 않으면 부적합	적합 ()	
지표 번호	3.f	고대비 화면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를 쉽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모든 화면(특히 모든 저시력인 화면)에 대하여 확인		
		○ 모든 화면을 고대비 화면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으면 적합 ○ 별도의 저시력인 모드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하나라도 누락 되면 부적합	적합 ()	
지표 번호	3.g	중요한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소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모든 화면에 대하여 확인(참조 . 7.b)		
		○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는 경우, 항목 컨트롤을 선택했을 때 컨트롤(버튼 등)의 색상이나 명도가 변화하거나, 소리나 진동으로 선택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적합 ○ 입력 컨트롤이 완료된 후 확인 컨트롤 버튼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반드시 확인 컨트롤 버튼의 색상을 변경해 주고, 동시에 음향이나 진동 등으로 알려주어야 함. 이러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부적합	적합 ()	
지표	3.h	화면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시각적 정보는 확대, 또는 축소할	구분	기본

번호		수 있어야 한다.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화면에 대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글자 및 심볼의 크기를 확대할 수 있으면 적합 ○ 확대 또는 축소가 불가능한 글자 또는 심볼이 있으면 부적합 	적합 ()	
지표 번호	3.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 상의 글자의 크기는 휠체어 사용자의 팔길이를 고려한 최대 가지거리 500mm 기준으로 글자의 높이가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한글의 글자 높이는 alphabet 과 달리 중성 받침이 포함되는 높이이므로, 휠체어 사용자의 최대 팔길이의 가지거리에서 0.7도 * 2로 계산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화면에 대해 확인 	최소	() 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글자의 크기가 10 mm 이상이면 적합 ○ 한 글자라도 10 mm 미만이면 부적합 	적합 ()	
지표 번호	3.j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시각적 정보는 배경으로부터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최소 4.5: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글자 크기가 12mm보다 큰 경우에는 명도 대비 3:1까지 낮출 수 있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화면에 대해 확인 	최대	()
			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크기가 10 ~ 12 mm 사이일 경우 명도 대비 4.5:1 이상이면 적합 ○ 글자 크기가 12 mm 보다 큰 경우 명도 대비 3:1 이상이면 적합 ○ 글자 크기가 10 mm보다 작은 경우 명도 대비 4.5:1 이하이며 경우 부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3.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컨트롤(또는 픽토그램)은 식별하기 쉬운 표준 모양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화면, 취소, 결제 등 주요 기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콘/픽토그램이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모양이면 적합 ○ 자체 제작한 특별한 아이콘/픽토그램은 부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3.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패드, 버튼, 등의 물리적 장치는 주변보다 2mm이상 돌출 또는 함몰되도록 해야 하며 위치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음성 	구분	기본

		안내 또는 점자 표시(또는 점자 레이블)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본체 인터페이스의 물리적 키패드와 버튼 등에 대하여 확인		
		○ 모든 물리적 장치의 조작부가 본체 표면으로부터 2 mm 이상 돌출 또는 함몰되어 식별 가능하면 적합	적합	()
		○ 모든 물리적 장치의 조작부에 점자 표시 또는 점자 레이블이 점자규정에 부합하거나 내용에 맞게 부착되어 있으면 적합 ○ 물리적 장치가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부적합	부적합	()
지표 번호	3m	화면에 문자 및 그림, 영상 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와 동등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방법		◎ 모든 화면에 대하여 확인		
		○ 모든 그림 및 영상 정보에 대해서 대체 텍스트가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되면 적합	적합	()
		○ 하나라도 그림 및 영상에 대해 대체 텍스트가 누락되어 있으면 부적합 ○ 대체텍스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아도 부적합	부적합	()

원칙 4. 색상 식별능력 보완(/2)

지표 번호	4.a	모든 시각적 정보는 녹색 바탕에 빨간색 텍스트,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텍스트로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시각적 정보 및 컨트롤에 표시된 문자에 대해 확인. ○ 하나라도 위의 색상 조합이 배경-문자 (반대의 경우, 문자-배경)에 사용되면 부적합 ※ 중요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적색 텍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드체를 사용 해야함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4.b	- 모든 시각적 정보는 색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중복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흑백 모니터로도 시각적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화면에서 흑백으로 모든 시각적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 ○ 색을 이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 동등한 대체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적합 ○ 시각적 정보가 하나라도 색상에만 의존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적합	()
			부적합	()

원칙 5. 청력 보완 및 대체(/4)

지표 번호	5.a	- “확인” 버튼과 같이 입력의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 소리와 함께 시각적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컨트롤 버튼의 색상 변화 등을 활용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모든 입력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컨트롤 버튼과 확인 버튼이 색상 변화 및 소리 등을 제공하는지 확인 ○ 하나라도 누락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색상	
			소리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5.b	음성이나 음향으로 출력되는 내용은 시각 또는 촉각적 대체 방법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방법		◎ 주요 정보에 대해서 확인 ○ 음성 및 음향 정보가 시각적 또는 점자/심볼 등과 함께 제공되면 적합 ○ 물리적 컨트롤 없이 화면상의 컨트롤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적합	시각	
			촉각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5.c	경고음은 점멸, 불빛, 등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방법		◎ 모든 경고음에 대하여 확인 ※ “확인” 을 나타내거나 수행의 완료를 나타내면서 화면이 전환되거나, 팝업(Pop-up) 창이 뜰 때에는 반드시 경고음을 주어야 함 ○ 경고음과 함께 멀티모달(multimodal) 효과가 발생하면 적합 ○ 경고음 발생과 함께 시각적 효과가 병행되면 적합 ○ 경고음만 발생하면 부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5.d	음성출력장치(스피커)의 음량은 최대음량 65 dB 내에서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방법		◎ 음성출력장치(스피커)의 볼륨 조절 방법과 최대음량을 확인 ○ 스피커의 볼륨 조절 장치가 있고, 음량 조절 범위가 65 dB 이 내이면 적합	최대	() dB
			적합	()
			부적합	()

원칙 6. 음성 입력 대체(/1)

지표 번호	6.a	음성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 되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입력을 요구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입력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키패드 및 터치 등의 형 식으로 대체 입력이 가능하면 적합 		적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입력을 요구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적합 		부적합	()

원칙 7. 인지능력 보완(/8)

지표 번호	7.a	- 사용자가 언제든지 실행을 되돌리거나 취소 및 초기화가 가능 하여야 한다. ※ 언제든지 쉽게 시작화면 또는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 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정보의 삭제, 삽입되어 있는 카드 등 의 회수가 이루어진 뒤 처음부터 다시 조작이 시작되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화면에 대하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적합 		적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든지 쉽게 시작화면 또는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적합 ○ 초기화하는 경우 입력된 정보의 삭제, 삽입되어 있는 카드 등의 회수가 이루어져야 적합 ○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작화면으로만 돌아갈 수 있어 도 적합이지만, 개선 요구 		부적합	()
지표 번호	7.b	작업의 실행에 대한 알림정보(피드백)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 양한 감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작업에 대하여 알림정보(피드백)을 확인 		시각	
			청각	
			촉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입력의 실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모드로 제공하면 적합 		적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및 오류 메시지를 하나의 모드로만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부적합 		부적합	()

지표 번호	7.c	모든 설계 요소는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 요소가 작업의 순서에 맞게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의 순서상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지 확인 ○ 물리적 키패드를 이용할 때 작업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이동하면 적합 ○ 음성정보(ARS, 스크린리더)를 제공할 때 작업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이동하면 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7.d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 전환이나 팝업 등 이벤트에 대하여 확인 ○ 화면을 넘기거나 멈출 수 있는 컨트롤 버튼이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으면 적합 ○ 화면이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임의로 전환되거나, 광고 등의 이벤트성 자동 화면 삽입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적합 	화면전환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7.e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거나 직원의 도움을 호출하는 버튼을 제공되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에서 확인 ○ 직원 호출을 위한 호출 버튼을 제공하고 있으면 적합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숫자 및 촉각(점자 레이블)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7.f	기호 또는 심볼로 표시된 정보는 문자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호 또는 심볼에 대하여 확인 ○ 화면 및 본체에 심볼/아이콘으로 표시된 정보 및 화면 요소가 문자와 병기되어 있으면 적합 ○ 하나라도 병기가 누락되어 있으면 부적합 ○ 기호 또는 심볼로 표시된 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7.g	글자 정보는 어려운 관용구나 외래어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모든 화면에 대하여 확인		

		○ 화면 및 본체에 표시된 정보에 잘 사용되지 않는 외래어나 어려운 용어, 영문재한자 및 기타 외국어 표기가 (단독으로) 하나라도 있으면 부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7.h	모든 설계 요소의 초점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 상에서 논리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스크린리더 상에서 초점이 논리적으로 이동하는지 확인 ◎ 순서에 관계없는 메뉴의 나열에서는 적용할 필요 없음.		
		○ 스크린리더의 초점 이동이 하나라도 비선형적으로 이동하면 부적합 ※ 특히 테이블의 내용을 읽어줄 때 주의	적합 ()	
		○ 스크린리더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적합	부적합 ()	

원칙 8. 깜빡거림 사용 제한(/2)

지표 번호	8.a	화면에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모든 화면에 대해 깜빡이는 화면 요소가 있는지 확인.	최대	() Hz
			최소	() Hz
		○ 하나라도 번쩍이는 요소가 있으면 부적합 ○ 번쩍이는 요소가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8.b	화면에 깜빡이는 객체가 사용된다면, 초당 3~50 회의 주기로 깜빡이지 않는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모든 화면에 대해 깜빡이는 화면 요소가 있는지 확인.	최대	() Hz
			최소	() Hz
		○ 하나라도 깜빡이는 화면 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 객체의 깜빡임 주기가 3 Hz 보다 작거나 50 Hz 보다 크면 적합 ○ 번쩍이는 요소가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적합	적합 ()	
			부적합 ()	

원칙 9. 휠체어 사용자 접근(/2)

지표 번호	9.a	화면 또는 인터페이스에 부착된 컨트롤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400mm ~ 1,220mm 사이에 있어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컨트롤 위치를 조절하거나 별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최대	()mm
			최소	() 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 및 본체의 모든 컨트롤과 조작 가능한 부분의 위치가 해당 범위 내에 있으면 적합 ○ 조작 가능한 부분이 하나라도 범위 밖에 있으면 부적합 	적합	()
			부적합	()
지표 번호	9.b	화면 내의 시각적 정보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2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화면을 내려주는 등의 별도 모드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확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으면 일반 모드에 대해서 그대로 확인 	최대	() mm
			적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 및 본체의 모든 시각적으로 표시된 정보의 위치가 1220 mm를 넘지 않으면 적합 ○ 큰 글씨의 화면 제목 이외의 정보가 하나라도 1220 mm 위에 있으면 부적합 	부적합	()

원칙 10. 개인정보 보호(14)

지표 번호	IDa	개인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개인식별기능에 대하여 확인		
		○ 개인식별번호를 사용자가 정할 수 있으면 적합 ○ 개인식별번호를 시스템이 임의로 정해주면 부적합	적합	()
		○ 개인식별기능이 필요가 없어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없음” 으로 적합	부적합	()
지표 번호	IDb	개인정보 이외에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개인식별기능에 대하여 확인		
		○ 숫자 등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 이외에 지문, 얼굴 인식 등으로 개인식별 기능을 제공하면 적합	적합	()
		○ 개인식별기능이 필요가 없어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없음” 으로 적합	부적합	()
지표 번호	IDc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개인식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 대하여 확인		
		○ 개인식별정보를 입력하는 내용이 화면에 암호형식으로 표시 되면 적합	적합	()
		○ 개인식별정보를 입력하는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거나 외부에 음성으로 읽어주면 부적합	부적합	()
		○ 개인식별정보를 입력하는 내용이 화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입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부적합		
		○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없음” 으로 적합		
지표 번호	IDd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읽어주지 않아야 한다.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개인식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 대하여 확인		
		○ 개인식별정보를 입력하는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입력할 때마다 음향이나 진동 등으로 표시해주면 적합.	적합	()
		○ 개인식별정보를 입력하는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거나 외부에 음성으로 읽어주면 부적합	부적합	()
		○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없음” 으로 적합		

나. (사용자 시험평가 세부 기준 및 방법) 사용자 시험평가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용자평가원이 직접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주요 기능을 시험하는 사용성 평가를 수행한다.

(1) 시험평가 신청인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모든 주요 기능에 대해 사용자의 특성에 무관한 주요 과업 시나리오를 5개 이상 준비하고, 이를 시험평가기관에 제출한다.

※ 기본적인 사용 상황부터 매우 복잡한 사용 상황까지를 평가하며, 사용자평가원마다 과업 시나리오의 평가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실시하여 학습효과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 과업 시나리오 5종 >

시나리오	시험평가 내용	목표
1	(사용자 1인 상황) 화면 이외의 입출력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가장 기본적인 키오스크 이용 상황에 대한 접근 확인
2	(사용자 1인 상황) 화면 이외의 입출력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기본적인 이용 상황 + 간단한 옵션 추가에 대한 접근 확인
3	(사용자 1인 상황) 화면 이외의 입출력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상품 카테고리가 여러 개의 상이한 탭으로 묶여 있을 때 여러 개의 상품을 동시 주문하는 경우에 접근 확인
4	(사용자 2인 상황) 화면 이외의 입출력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여러 개의 상품에 대한 취소 및 중간에 상품 카테고리가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여 선택하는 경우의 용이성 확인
5	(사용자 3인 상황) 화면 이외의 입출력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상품 카테고리가 다르고 옵션이 추가된 다양한 주문 및 동일 상품을 추가하여 주문하는 경우의 용이성 확인

(2) 시험평가기관은 과업 시나리오를 시험평가 신청인과 함께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평가용 과업 시나리오를 확정한다.

(3) 시험평가기관은 장애인·고령자 사용자평가원을 유형별로 각 2인 이상 섭외, 실제 설치 장소와 최대한 유사한 실험실 환경에서 5개 과업 시나리오에 대해 사용자심사를 수행한다.

< 사용자평가용 서식 >

과업 번호	시나리오 내용 기술 (예, 사용자 1인 아메리카노 1잔 주문 및 결제)		
**장애인			
피실험자 번호 #	효과성	성공/실패	피실험자의 화면 터치 횟수와 관계없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작업 소요시간이 비장애인 기준의 5배를 초과하면 실패로 간주. 성공하면 효과성 값은 1, 실패하면 0. 실패의 경우, 어떤 화면의 어느 작업에서 실패했는지를 기술
	효율성	비고 2항 참조 %	작업완료시간: ____초/(비장애인 기준시간 ____초) 작업 성공의 경우에만 적용, 작업 실패 시에는 공란으로 유지. 성공의 경우, 효율성 % 계산을 위해 작업 소요 시간을 기입, 비장애인 기준과 비교.
			화면터치횟수: ____회/(비장애인 기준횟수 ____회) 작업 성공의 경우에만 적용, 작업 실패 시에는 공란으로 유지. 성공의 경우, 효율성 % 계산을 위해 화면 터치 횟수를 기입, 비장애인 기준과 비교.
	만족도	/5	성공의 경우에만 5점 척도로 만족도 평가 실시
	비고	① 피실험자가 사용한 모드를 이 칸에 기술 (예, 일반 / 고대비 / 휠체어) ② 효율성 계산에서는 두 지표 중, 비장애인 기준과 비교하여 더 나쁜 지표를 선택하여, 해당 지표가 비장애인 기준에 비해 3 배 이하이면 100 %, 3 배 이상이면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 값을 기입 $y = 100 - 100/3 * (\text{장애인지표}/\text{비장애인지표} - 3) \%$	

- (4) 비장애인(5인 이상)과 장애인·고령자 사용자평가원을 대상으로 관찰과 평가를 진행한 다음 총점을 5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최종 사용자심사 점수로 확정한다.
- ※ 사용자평가는 각 장애 유형별로 최소 2인 이상, 총 12인 이상의 사용자평가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비장애인의 기록을 제외한 12인의 평가 총합 60점을 50점 기준으로 환산, 조정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 사용자평가원 구성(예시) >

(1. 시각장애인 2인 (저시력, 여 26세)(저시력, 남 33세)
(2. 시각장애인 2인 (전맹, 남 60세)(전맹, 여 37세)
(3. 지체장애인 2인 (척수장애, 휠체어, 남 30세)(뇌병변장애, 휠체어, 여 40세)
(4. 지체장애인 2인 (상지지체장애, 남 37세)(뇌병변장애, 여 41세)
(5. 청각장애인 2인 (난청, 남 40세)(농인, 여 24세)
(6. 고령자 2인 (82세, 남)(71세, 여)
(7. 비장애인 5인 (33세, 남)(28세, 여)(49세, 남)(25세, 남)(55세, 여)


원칙 1. 효과성

지표 번호	1.a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주요 기능을 모두 완수할 수 있는가?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시나리오에 대하여 사용자 유형별 평가			
	○ 총 시나리오 개수 중에서 사용자가 최종 완수한 작업의 비율로 계산, ○ 실패한 작업은 효과성 0점 처리 ○ 완수하지 못하는 작업에 대해 평가지침에 기반한 문제점 확인			()

원칙 2. 효율성

지표 번호	2.a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노력이 과도하지 않은가?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 시나리오에 대하여 사용자 유형별 평가			
	○ 성공한 작업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효율성을 계산, 이를 효과성 1점 만점에서 비율로 차감 ① (비장애인 사용자의 평균 작업완료 시간 대비 장애인 사용자의 작업완료 시간) 비율로 계산 ② 또는 (비장애인 사용자의 평균 조작 횟수 대비 장애인 사용자의 조작 횟수) 비율 중에서 더 큰 값이 나온 지표를 효율성에 반영, 즉 두 개의 지표 중에서 더 결과가 나쁘게 나온 지표를 효율성에 반영 ○ 효과성이 인정되는 성공한 작업에 대해서만 적용 ※ 3배 기준 이내이면 효율성 100%로 효과성 점수를 그대로 인정 ○ 비장애인 사용자에 비해 시간 또는 조작 횟수 중에서 더 나쁜 결과가 3배 이상인 작업에 대해서 다음 식으로 효율성을 계산하고, 효과성 점수 10%(1점 만점)에 가중치로 곱하여 인정 ※ $y = 100 - 100/3 \times (\text{장애인지표}/\text{비장애인지표} - 3) \%$			()

원칙 3. 만족도

지표 번호	3.a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만족스러운가?	구분	기본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에 대하여 사용자 유형별 평가 ○ 각 작업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체 평균을 계산 < 왼쪽 그림부터 각 1, 2, 3, 4, 5점 > 		
		 <p>○ 효과성이 인정되는 성공한 작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나 효과성 비율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이용.</p>	()	

다.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 면제 기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적합성평가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경우 설계지침 검증 기준 항목 중에서 아래에 있는 검증 기준 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표 번호	시험평가 기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3.a	- 모든 시각적 정보는 음성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의 신호에 따라 음성 정보를 활성화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화면의 안내메시지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안내 기능(자막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3.b	- 음성 정보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단자 및 연결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한다. -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연결하면 스피커에서 읽어주는 소리는 차단되어야 한다. ※ 표준 이어폰(3.5 mm) 또는 무선 이어폰 등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5. 음성지원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어폰 소켓을 제공하여야 한다.
3.d	- 모든 선택 가능한 시각적 정보는 물리적 키패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물리적 키패드는 화면상에서 초점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숫자 키패드 또는 화살표 방향 키패드 등을 의미한다.	1. 시각장애인용 Keypad(0 ~ 9까지의 숫자버튼, ‘취소’ / ‘정정’ / ‘확인’ 버튼 포함)를 부착 및 제공하여야 한다.
3.h	- 화면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시각적 정보는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	6. 발급화면 하단에 “화면확대” 버튼을 제공하여 노인 및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발급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패드, 버튼, 등의 물리적 장치는 주변보다 2mm이상 돌출 또는 함몰되도록 해야 하며 위치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 또는 점자 표시(또는 점자 레이블)를 제공하여야 한다. 	<p>3. 시각장애인용 장치들은 정해진 위치(오른쪽 또는 중앙)에 장착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도난,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p> <p>4. 주요 조작부(키패드, 수수료 투입장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등) 주변에 점자 표시(또는 점자 라벨 부착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p>
9.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 또는 인터페이스에 부착된 컨트롤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u>400mm ~ 1,220mm</u> 사이에 있어야 한다. 	<p>7.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앉은 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400mm 이상 1,220mm 이하로 작동부를 부착하여야 한다.</p>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및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지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 종류	대표자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및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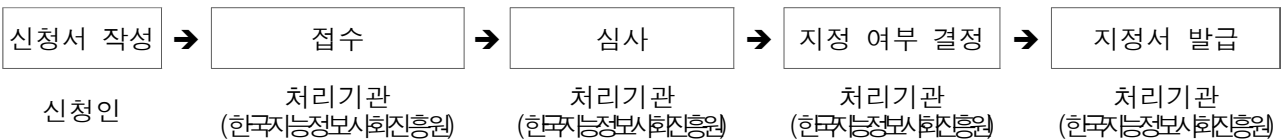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사업계획서 3.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및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지능정보제품 관련 개발 및 용역 수행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 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 지정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시험평가 종류 :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유효기간: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및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제5항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직인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및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		업종형태: 제조자 [] 수입자 [] 판매자 []
	주소		
	실무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제조사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		
	주소		
	실무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제품 (필요 시 별지사용이 가능합니 다.)	시험평가 분야		제품명칭
	용도		시험평가 신청제품
	기본 모델명		처리방법
	시험평가 신청제품 제출		파생 모델명
	시험평가 신청 제품 1식 []		
	접근성 기능 설명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반환 [] 폐기 []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9. 휠체어 사용자 접근 및 조작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10.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당 제품 기능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및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험평가기관명 귀하

제출서류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시험평가 신청인	→	접수	→
		시험평가 수행 처리기관(시험평가기관)	→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 발 급

210mm×297mm(백상지 80g/㎡)